

수원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5524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김광덕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00,8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5. 13. 원고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100,9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처남인 C에게 100,865,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원고가 위와 같은 차용을 할 당시 2개월 안에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가기로 하였으나, 채무 연체 등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날부터 2020. 6. 26.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1)에게 합계 115,840,000원을 금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송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15,84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는바,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위 금원이 피고가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C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중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20. 5. 13. 이전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피고는 C에게 2019. 11. 9. 2,000만 원, 2020. 1. 30. 1,600만 원, 2020. 2. 17. 1,400만 원 등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2020. 5. 13.부터 2020. 6. 28.까지의 기간 동안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가 115,840,000원이지만, 반대로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도 89,370,010원에 이르는 점, 피고와 C가 동거 또는 사실혼관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중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하여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와 C의 통장 거래내역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여 나가는 전형적인 대여 형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짧은 기간에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았고, 같은 날에도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유사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간에 송금한 금원의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C가 동거 또는 사실혼관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C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별지부록 1

소외 와 피고 의 증여내역소외 의 거래 은행 : 주식회사소외 의 계좌번호 :

예금종류 : 자유저축예금

예금주명 :

순번	거래일시	입금금액(원)	거래기록사항
1	2020. 5. 13. 19:17:04	50,000,000	
2	2020. 5. 14. 03:16:01	3,000,000	
3	2020. 5. 14. 21:06:46	1,000,000	
4	2020. 5. 16. 02:56:44	25,000,000	
5	2020. 5. 16. 03:38:02	10,000,000	
6	2020. 5. 16. 18:56:17	100,000	
7	2020. 5. 16. 18:57:22	900,000	
8	2020. 5. 27. 09:00:46	300,000	
9	2020. 6. 14. 13:05:30	800,000	
10	2020. 6. 16. 15:43:38	1,100,000	
11	2020. 6. 16. 17:38:47	2,000,000	
12	2020. 6. 16. 18:06:47	1,000,000	
13	2020. 6. 17. 13:07:21	3,000,000	
14	2020. 6. 18. 14:54:47	2,500,000	
15	2020. 6. 18. 16:57:19	1,000,000	

16	2020. 6. 19. 11:44:37	2,000,000		
17	2020. 6. 20. 01:25:28	3,500,000		
18	2020. 6. 20. 05:04:51	1,500,000		
19	2020. 6. 20. 13:57:35	3,000,000		
20	2020. 6. 21. 14:22:21	1,100,000		
21	2020. 6. 21. 19:16:16	1,540,000		
22	2020. 6. 26. 10:39:01	500,000		
23	2020. 6. 26. 17:13:12	1,000,000		
총 거래 횟수 23회		115,840,000		

1) C와 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